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

발의연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:오기형·강훈식·김종민

김한규 · 김영배 · 박홍근

김태년 · 홍기원 · 이원택

최민희 • 복기왕 • 김태선

김문수 · 박홍배 · 조인철

김현정 • 이연희 • 한민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,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.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,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.

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, 임차료, 전기·수도·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.

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

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,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30조의3신설).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3(생계비계좌) ① 은행은 예금자(자연인에 한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압류금지생계비"라 한다)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(이하 이 조에서 "생계비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있다.
 - ②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 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,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 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 - ③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한다.
 -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제30조의3(생계비계좌) ① 은행은 예금자(자연인에 한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압류금지생계비"라 한다)을 초과하
	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(이하이 조에서 "생계비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있다. ②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, 예금자가 다른 은
	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 를 개설할 수 있다. ③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압류 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 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

로 송금하여야 한다.

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